2021년도 개방형OS 확산 지원사업 안내서

2021. 3.



목 차

1. 사업개요
1. 추진배경 2
2. 추진방향 2
3. 추진체계 3
4. 관련규정 3
II. 사업내용
1. 지원내용 5
2. 과제 선정절차 7
3. 사업 관리방안 10
4. 추진일정 12
Ⅲ. 신청서류 및 방법
1. 신청서류 14
2. 신청방법 15
3. 작성요령 16
4. 유의사항 17
5. 사업관련 문의 18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국내 PC의 운영체제는 특정 제품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소프트 웨어 시장 전체가 특정 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실정
 - * 국내 데스크톱PC OS 시장의 MS윈도우 점유율: 88.8% (statcounter, '20.8)
 - 최근 윈도7 기술종료 사례와 같이 특정기업에 종속된 운영체제 사용으로 기술지원 중단 및 업그레이드 비용 발생
- 이에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외부망 PC 운영체제**를 MS윈도우에서 **개방형OS**로 **단계적 전환** 계획^{*} 발표 등 개방형OS 확산 추진
 -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관계부처합동, 2019

2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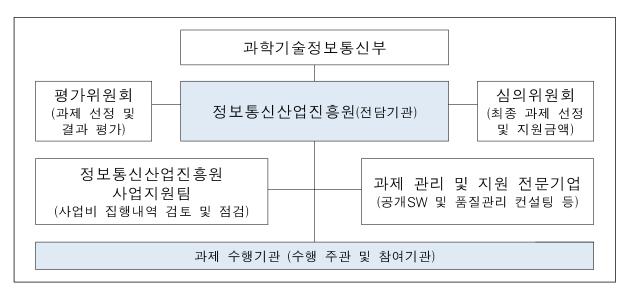
□ 개방형OS 호환성 확보 지원

- 개방형OS를 지원하지 않는 SW의 **개방형OS 환경 전환개발 지원**을 통한 개방형OS의 보급·확산 기반마련
 - 개발 산출물의 활용률 향상을 위한 수요처 확보 과제 우대
 - 자발적 개방형OS 확산이 어려운 민간의 현실을 고려하여 민간 수요처 확보 과제 추가 가산점 부여
 - * 민간 및 공공 수요처 과제의 가산점 차등 부여(민간 3점, 공공 2점)

□ 개방형OS 민간 시범도입

- 응용SW 의존도가 낮은 특정업무용PC 대상의 개방형OS 도입·활용 지원을 통한 개방형OS 활용 사례 확산으로 민간의 개방형OS 거부감 완화
 - 개방형OS 시범도입을 위한 컨설팅, 교육, 마이그레이션, 라이선스 등 비용 지원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는 사업 추진 상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변동 적용 할 수 있음

4 관련규정

-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 ㅇ 정보통신방송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
- ※ 상기 일부 규정은 폐지, 개정, 제정 등이 예고됨에 따라, 관련 사항은 최종 협약 시 적용토록 함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o (세부사업) 중점 지원내용에 따라 2개 사업으로 구분
 - 개방형OS 호환성 확보 지원
 - ① (신규전환개발) 개방형OS 기반 SW 신규개발 혹은 윈도우 기반 SW를 개방형OS 호환 전환개발
 - ② (고도화) 同사업 旣지원과제 또는 旣호환 가능한 개방형OS 기반 SW에 대한 고도화 개발
 - ※ 데스크탑용 SW 개발만 지원 (서버용 SW 지원불가, 단 데스크탑에 설치되는 형태의 웹 플러그인 지원 가능)
 - 개방형OS 민간 시범도입 지원
- o (지원규모) 총 31.5억원, 총 18개 과제 내외
 - (개방형OS 호환성 확보) 총 25.5억원, 15개 과제 내외
 - * (신규전환개발) 과제당 1.7억원 이내 / (고도화) 신규전환개발 과제의 50% 이내
 - ** 잔여 예산이 존재하는 경우 평가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 추가선정
 - (개방형OS 민간 시범도입) 총 6억원, 3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2억원)
- o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1년 11월 30일 까지
- o (지원대상) 국내 SW기업 등 법인사업자 (대기업 제외)
 - * 단 사업비 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업 참여 가능

구분	내용			
개방형OS	ㅇ 수요처 확보는 선택사항이나 수요처 확보과제 우대			
호환성 확보	* 민간수요 3점, 공공수요 2점			
개방형OS	ㅇ SW기업(주관) 및 개방형OS 수요기업(참여) 필수			
민간 시범도입	* 공공기관 제외			

o (지원내용)

- (개방형OS 호환성 확보) 데스크탑 응용·보안SW 전환개발을 위한 인건비, 장비구입 등 비용 및 컨설팅 지원
- (개방형OS 민간 시범도입) 개방형OS 도입·활용을 위한 장비구입, 인건비, 마이그레이션, 라이선스비용 등

o (기타사항)

	구분	내용		
	- 사업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 정산 실시 - 사업기간 내 과제 진도점검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이행(중간점검) - 사업기간 이후 5년간 성과(경제적 성과, 일자리 창출 등) 조사 이행			
의무 사항				
동시지원		- 2개 사업의 수요처가 상이한 경우 가능		

2 과제 선정절차

 \square (선정절차) 1단계 적정성검토 \rightarrow 2단계 선정평가 \rightarrow 3단계 종합심사

사업공고 및 접수	\Rightarrow	적정성검토	\Rightarrow	발표평가	\Rightarrow	종합심사
NIPA		NIPA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사업공고 및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과제 신청서 전산접수		제출서류 적정성, 유사과제 여부 등 검토		기술성, 창의성, 실용성, 발전성 등 평가 (60점미만 탈락)		평가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및 지원금 확정

- (**걱정성검토**) 신청자격 적정여부, 지원과제 중복여부, 의무사항 이행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 검토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을 통한 검토
 - * 부적정시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제외, 평가반영 등의 조치 실시

< 사전검토 주요내용 >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별첨 등 신청서류 적정여부			
중복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 중복여부			
의무사항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 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부도 및 자본전액잠식 여부 ★ (외부감사기업)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여부 - 채무불이행자 등록여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 ★ 회생 및 변제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무변제를 이행중인 경우 제외			
동시수행과제	- 총괄책임자 3개, 참여인력 5개 초과 여부			

- o (선정평가) 신청과제의 지원 분야를 고려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 지원과제 수 대비 신청과제 수가 2배수 이상일 경우, 사전 서면평가를 통한 발표 평가 대상 선정 (1.5배수)

< 개방형OS 호환성 확보 지원사업 평가 기준표 (안) >

구분		주요내용	배점 (100점)	
과제내용 적정성	 신규개발 혹은 고도화 대상 SW의 산업 적용 가능성, 필요성 등 과제 주제의 필요성, 시급성 등 수요기관 현황을 고려한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확산 가능성	O 사업종료 후 개발 결과물의 확산 계획 평가 O 공개SW 커뮤니티로의 성장 및 지속 가능성 - 외부참여 유도계획 수립여부 및 계획의 실현가능성 O 개발 결과물을 적용 가능한 개방형OS의 범위 - 개방형OS 종류 및 배포판 버전 등에 따른 의존도 O 해외진출 등 확산 계획의 적정성			
수행역량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기관 역량 평가 개발 범위, 방법, 투입인력 등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목표에 대한 설계, 개발 및 테스트 방법 등 공개SW기반 개발방식 및 품질관리 역량 평가 			
예산	ㅇ 예산 산정의 적정성			
	ㅇ 고용현황	O 직전년도 3년간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 유형(정규직 비율, 청년일자리 등) 변화, 4대보험 가입률 등	2	
일자리 부분	O 일자리 확대· 개선 실적	ㅇ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등 실적	1	
	ㅇ 계획 여부	본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전략및 계획 마련	2	
가산점	O 과제 접수일 기준으로 특정 적용기관 확보 유무 확인O 수요기관 확보- "수요기관 적용 확약서" 제출기관 대상 가점- 민간수요 3점 / 공공수요 2점			
합계				

< 개방형OS 민간 시범도입 지원사업 평가 기준표 (안) >

구분		주요내용	배점 (100점)		
과제내용 적정성	공통	사업수행의 필요성 및 가능성수요기관의 개방형OS 시범도입·활용의 필요성 및 가능성공급기관의 개방형OS 도입·활용의 교육·컨설팅 등 지원 적정성	25		
확산	o 개방형OS 확산규모(수요기관 수, 시범도입규모 등) 수요 o 수요기관 내 개방형OS 확산 계획의 타당성 및 지속 가능성 기관 - 타 부서 및 타 업무 등 확산계획의 타당성 - 사업 종료 이후 개방형OS 활용의 지속 가능성				
가능성	공급 기관	공급기관의 향후 타 수요기관 대상 확산 계획의 타당성타 수요기관으로의 확산 계획의 실현가능성공급기관의 글로벌 확산 계획의 실현가능성	10		
수행	수요 기관	수요기관의 개방형OS 도입 및 활용 역량개방형OS 도입 관련 전담 인력 및 조직 등의 적정성개방형OS 활용 및 유지보수 관련 역량 향상 계획의 적정성			
역량	공급 기관				
예산	공통	ㅇ 예산 산정의 적정성			
		O직전년도 3년간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O고용현황유형(정규직 비율, 청년일자리 등) 변화, 4대보험 가입률 등			
일자리 부분	공통	O 일자리 확대· 개선 실적 O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등 실적	1		
		o 계획 여부 O 본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 진 전략 및 계획 마련	2		
합계 1					

- **(종합심사)** 발표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
 - * 2개사업 동시지원 및 개방형OS 호환성 확보사업의 고도화 과제 수에 따라 최종 지원금 산정
 - *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비 및 사업내용 수정·보완 후 협약 체결 (수정·보완 불가시 차순위 과제 지원)

2 사업 관리방안

□ 사업비 집행내역 관리

- (점검대상)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모든 과제에 대한 사업비 집행 현황 점검
 - * 본 과제의 수행기관 대상 현장방문 실시
- (점검형태) 정기점검, 수시점검, 일상점검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실시
 - (정기점검) 현장점검 계획에 의한 중간점검(NIPA, 현장방문)
 - * 점검시기: 과제별 50% 이상 수행되면서 종료 2개월 이전에 실시 (단, 협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시기를 조정)
 - (수시점검) 문제과제 발생 시 불시 점검(NIPA, 현장방문)
 - * 사업부서는 과제중단, 불성실실패, 규정위반 등 발생 시, 사업총괄팀으로 해당내용을 통보하고 현장점검 방법·내용 등에 대해 사전협의 必
 - (일상점검) 사업비관리시스템(PMS) 상에서 수행과제 집행내역을 수시 확인(NIPA, 온라인점검)
- (관련교육) 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협약 후 관련 규정, 사업비 관리시스템(PMS), 사업관리시스템(SMART) 활용법 등 교육 실시

□ 평가관리

- (진도점검) 개발현황, 외부 개발참여 실적 등에 대한 진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비한 과제에 대한 문제 조기파악 및 조치
 - 사업 총괄책임자, 참여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점검 실시
- (최종평가) 과제 종료 후 협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도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평가 등 실시
 -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제 26조(사업 중간보고 및 진도점검)
 -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제 27조(사업 최종보고 및 평가)

□ 기타 관리사항

- 수행과제의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에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일자리 창출 현황을 포함하여야 함
- 제안 서비스가 클라우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 ㅇ 과제선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 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ㅇ 협약체결 시 사업비 지급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공개SW 개발 및 품질 컨설팅 (개방형OS 호환성 확보 지원사업 대상)

- **(품질 컨설팅)** 별도 품질관리 전문기관에서 개발초기에서 종료시점 까지 개발과제의 품질관리 수행 및 결과물에 대한 검증 실시
 -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의무(1회) 및 관련 컨설팅 지원
 -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SW 품질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 모든 지원과제는 과제종료 후 1년 이상 프로젝트 운영 및 유지 방안 계획서에 근거하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관리 의무화
- (공개SW 개발 컨설팅) 개방형 공개SW 개발방식에 충실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희망기업에 한해 선택적 지원)
 - 공개SW 개발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방법론 및 커뮤니티 운영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추진일정

단계	내 용	비고
사업공고	o 사업공고 : 2021. 3.	과기부, NIPA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o 접수기한 : 2021. 3. ~ 4. o 접수서류 :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	전산접수
적정성검토 및 선정평가	 o 평가 : 2021. 4 - 지원과제 수에 따라 사전 서면평가 가능 - 평가대상 기관에게 별도 통보(일정 등) 예정 o 평가형식 : 지원신청서 서류검토, 발표 평가 	서류검토, 발표평가
선정발표	o 2021. 4월 말	개별통보
협약체결	o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 2021. 5월 초 o 협약 체결 : 2021. 5월 초	전자협약
착수보고회 및 사업관리설명회	o 2021. 5.	별도통보
중간점검	o 각 과제별 사업추진 진도 및 사업비 집행점검 2021. 9.	현장방문
결과평가	o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2021. 12. o 각 과제별 최종 결과평가 : 2021. 12.	발표평가
사업비 정산	o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회계법인 위탁정산

* 상기 일정은 우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류 및 방법

1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신청서) 및 별첨 각 1부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작성양식	비고
1	사업계획서(신청서)	[번 친 4] 시 친 아시	표지 서명 및 인감 포함 제출 ※ "개방형OS 호환성 확보 지원사업",
2	평가항목 참조표	[별첨1]신청양식	"개방형OS 민간 시범도입"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 존재
3	과제 신청 자격요건 등 사전 자기점검표	[별첨2] 신청양식	수행기관(주관,참여)
4	수행기관 참여의사확인서	[별첨3] 신청양식	수행기관(주관,참여)
5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별첨4] 신청양식	과제 참여자 전원(주관,참여)
6	사업자등록증	고유양식에 따름	수행기관(주관,참여), 국세청홈택스
7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고유양식에 따름	수행기관(주관,참여), 국세청홈택스
8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2개년)	고유양식에 따름	수행기관(주관,참여) 국세청홈택스, 결산 미완료 시 추정 재무제표
9	수요기관 확약서 (개방형OS 호환성 확보 지원사 업만 해당, 선택사항)	[별첨5] 신청양식	수요기관확약서 혹은 ※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확약서 양식" 내용과 상응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요 기관장명의의 공문으로 대체가능

- * 상기 제출서류는 모두 PDF 파일 형태로 제출
- *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전산접수 함
- * 상기 제출서류는 위탁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우리원이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우리원이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

2 신청방법

□ 접수 기간

- 2021. 3. 10.(수) ~ 2021. 4. 9.(금) 15:00
 - ▶ 접수 기간 및 시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
 - ▶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전산시스템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1~2일전에 접수완료 권장

□ 신청 방법

- 서류 제출 전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양식, 작성내용 등 사전에
 작성 요령에 대해서 확인 후 최종 제출 요망
- 사업지원스마트시스템(SMART)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 NIPA SMART시스템(https://smart.nipa.kr) > 로그인(과제 총괄책임자) > "접수" > "과제접수" > "2021년 개방형OS 확산 지원사업" > "과제신청" 클릭
 - * 세부내용은 별첨 전산접수 매뉴얼 참조
- 신청서류(개방형OS 환경개발 및 보급·확산사업 신청서 및 별첨 각 1부) 업로드
 - * "과제접수"내 "과제정보", "목적 및 내용", "기관정보" 등 탭별 해당내용 입력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 * "과제접수"내 "첨부자료" 탭에서 신청서류 업로드 <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별첨 파일은 zip 형태로 묶어서 업로**드 >
 - * 시스템에서 제출버튼을 눌러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접수증을 출력하여 확인) (마감 전에는 수정제출 가능. 수정 후에는 반드시 제출버튼을 다시 눌러야 함)

3 작성요령

□ 필수 제출 자료 관련

- (사업신청서) 해당 양식을 숙지하고, 요구사항에 맞게 핵심내용 중심으로 누락 없이 작성하며, 가능한 그림, 표, 통계 등을 활용 하여 정량적·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
 -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 입력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 주석처리(약어는 풀네임도 함께 표기)
 - ◇ 별첨을 제외한 본문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 양식, 제목, 순서 등 수정 불가(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 명기)
 - ◇ 작성양식내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표시문구(파란색)는 최종제출전 모두 삭제
 - ♦ 제출일자는 사업관리시스템(SMART)에 신청일자로 기재
 - ◇ 기관장 날인은 법인인감(비영리기관은 직인가능), 총괄책임자 날인은 서명가능
- (사업비) 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조건을 충족하도록 재원을 책정 하고, 관련규정에 맞게 비목 편성
 - ◇ 사업비 산정 및 편성 시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및 별표(불인정 기준 등) 확인
 - ♦ 위탁정산수수료(정부과제 표준수수료 참조) 필수 편성
 - ◇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간접비 산정불가
 - ◇ 사후환급 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산정
 - ◇ 모든 사업비는 수행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하며, 특히 자산취득비(범용성), 국외여비, 연구 및 일반용역비, 특근매식비 등은 수행과제와의 직접적 관련성 을 해당금액 하단에 구체적으로 기재
- 제출된 서류 및 신청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 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됨

4 유의사항

□ 지원 제한

-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분야, 수행기관 자격 등 요건 미충족할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대상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별표2]를 참고하여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조치 이행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서류제출 및 기타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등
 - * 우리원이 확인을 위하여 추가 제출요청 한 서류 중 지정 기한 내에 제출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사업비 편성 및 관리

- ㅇ 모든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관리
 - * 사업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신규인력 인건비로 편성한 금액은 타용도로 사용(전용)이 불가하며,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사업비(출연금)는 사업비관리시스템(PMS)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참고]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대상 기준 및 조치 사항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 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조치	 수행기관, 수행기관대표자의 경우 지정공모: 탈락처리 자유공모: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참여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

사업관련 문의

5

구분		담당자	연락처
사업 관련	개방형OS	공개SW팀	043-931-5378
	시범도입	송원민 수석	wmsong@nipa.kr
내용	개방형OS	공개SW팀	043-931-5379
	호환성확보	박영근 선임	owo2323@nipa.kr
과제 접수(전산등록)		스마트시스템	070-5151-8239
관련		유지보수팀	smart@nipa.kr